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광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099

발의연월일: 2024. 8. 22.

발 의 자:임광현·박홍배·진선미

박민규 · 임오경 · 유동수

황명선 · 정성호 · 전용기

정준호 • 박홍근 • 차지호

정일영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상속인들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초공제나 인적공제 등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일괄공제 하 고 있으며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를 통해 법정상속지분 내 실제 상속 가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.

국세통계에 따르면 2010년 당시 서울의 피상속인수 대비 과세대상자 비중은 2.9% 수준이었으나 2023년에 15.0%로 확대되었고 같은 기간 전국의 피상속인수 대비 과세대상자 비중은 1.4%에서 6.82%로 중가하였음. 과거 일부 고액자산가만 부담하는 것으로 여겨지던 상속세가 중산층으로 확대되는 추세임. 또한 미국·프랑스 등 주요국에서는 배우자 간의 상속이 일종의 재산 분할 성격이 있다고 인정하여 해당공제를 한도 없이 전액 공제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.

그러나 상속세 일괄공제 및 배우자공제 금액은 1996년 세법 개정 당시 5억원으로 설정된 이후 28년이 된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 는 상황임.

중산층의 자산가격 등 물가 상승에 따른 세부담을 합리적으로 미세 조정하기 위해 현실적인 수준의 상속공제 금액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. 또한 고령의 부부 중 한 분이 사망하였을 경우 남은 배우자의 주거안 정이나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, 여성인 배우자의 재산권 형성 기여도가 폭넓게 인정되는 경제·사회적 환경 변화에 맞춰 배우자 상 속공제 금액이 조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됨.

이에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을 8억원으로 상향하고 배우자공제 금액을 10억원으로 상향하여 중산층에 대한 상속세 부담 완화를 이루려는 것임(안 제19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, 제24조, 제28조제1항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「국회법」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 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.

법률 제 호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9조제4항 중 "5억원"을 각각 "10억원"으로 한다.
제21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"5억원"을 각각 "8억원"으로 한다.
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"5억원"을 "8억원"으로 한다.
제28조제1항 단서 중 "5억원"을 "8억원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배우자 상속공제 및 일괄공제에 관한 적용례) 제19조제4항, 제2 1조제1항, 제24조 및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 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9조(배우자 상속공제) ① ~	제19조(배우자 상속공제) ① ~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	4
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	
상속받은 금액이 <u>5억원</u> 미만이	<u>10</u> 억원
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<u>5억원</u>	10억원
을 공제한다.	
제21조(일괄공제) ① 거주자의 사	제21조(일괄공제) ①
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	
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	
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	
액을 합친 금액과 <u>5억원</u> 중 큰	<u>8</u> 억 원
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. 다	,
만, 제67조 또는 「국세기본	
법」 제45조의3에 따른 신고가	
없는 경우에는 <u>5억원</u> 을 공제한	<u></u> 8억 원
다.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24조(공제 적용의 한도) 제18	제24조(공제 적용의 한도)
조, 제18조의2, 제18조의3, 제19	
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	
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	
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	

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. 다만, 제3호는 상속 세 과세가액이 <u>5억원</u>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.

1. ~ 3. (생략)

제28조(증여세액 공제) ① 제13조 여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(증여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)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. 다만,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「국세기본법」 제26조의2제4항 또는제5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로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(생략)

,
<u>8억원</u>
1. ~ 3. (현행과 같음)
제28조(증여세액 공제) ①
<u>8</u> 억 원
<u>0 L</u>
, ,
② (현행과 같음)